



의안번호	제 2012 - 24 호
보 고 연 월 일	2012. 12. 17. (제45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최형표, “조세범죄 양형기준 검토(Ⅳ)”
함석천, “공갈범죄 양형기준 검토”
최형표, “방화범죄 양형기준 검토(Ⅱ)”
주용완, 조석영, “방화범죄 양형기준 검토(Ⅲ)”
최형표, “조세범죄 양형기준 검토(Ⅴ)”
함석천, “공갈범죄 양형기준 검토”
함석천,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최형표, “방화범죄 양형기준 검토(Ⅲ)”
주용완, 조석영,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검토(Ⅳ)”
최형표,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최형표, “조세범죄 양형기준 검토(Ⅵ)”
이중교, “조세범죄 양형기준 검토”
최형표,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I. 제61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2. 11. 12.(월)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2. 참석자(10명)

- 수석전문위원, 이주원, 이종교, 이진국, 조석영, 주용완, 최진녕, 최형표, 함석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공갈, 조세,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4. 회의 요지

가.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1) 형량범위

(가) 다수 의견

■ 일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6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2월 - 4년	3년 - 7년
4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원 이상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2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일반공갈의 4 유형 또는 5유형에 해당할 경우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의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범위와 일반공갈의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형량범위에 의한다.

(나) 소수 의견 - 주용원, 조석영, 이종교

■ 일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6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6월 - 4년	3년 - 6년
4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5	50억 원 이상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3	50억 원 이상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원 미만	2년6월-6년	5년-8년	7년-10년
2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년-8년	7년-10년	9년-12년
3	50억원 이상	7년-10년	9년-12년	11년-14년

(2) 양형인자

(가) 행위자의 직업 또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

(a) 당초안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해서 공갈에 이른 경우
 - 기자 등 언론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해 피해자의 위법사항이나 비리를 공표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 시민단체 등 사회적 영향을 가진 단체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해 직무상 권한행사를 빙자해서 공갈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b) 주무 전문위원 수정안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해서 공갈에 이른 경우
 - 언론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해 피해자의 위법사항이나 비리를 공표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 사회적 영향을 가진 단체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해 직무상 권한행사를 빙자해서 공갈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논의 결과

- 양형인자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해 공갈에 이른 경우
 - 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을 가진 단체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해 직무상 권한행사를 빙자해서 공갈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집행유예 기준

(가)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포함시킬지 여부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시된 의견

(a) 포함시키자는 의견 - 주용완, 조석영

- 공갈범죄는 인격적 법익에 관한 범죄 성격과 재산법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양자의 인자를 모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

(b) 부정적 요소에서는 삭제하고, 긍정적 요소로는 포함시키자는 의견 - 이주원

- 공갈범죄에 있어서 손해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인격적 법익에 관한 범죄의 성격이 강하고, 손해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재산법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 따라서 재산범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 적용되는 인자인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만 존치하는 것이 상당함

(c) 모두 삭제하자는 의견 - 함석천, 최형표, 이진국, 최진녕

- 공갈범죄에 있어서는 조직폭력배를 빙자하거나 강도에 가까운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에는 갈취액이 적은데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반하여 상대방의 약점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경우에는 대개 금액이 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처벌불원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공갈범죄에 있어서는 위 손해의 규모가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 있다고 해서 위 인자를 그대로 공갈범죄에도 차용해서 사용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위 인자는 모두 재산범죄에 있어서 명목상 손해와 실질적 손해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질적 손해의 규모를 양형에 반영하고자 설정된 인자임
- 하지만 공갈범죄의 경우에는 사기, 횡령·배임범죄와 같이 명목상 손해와 실질적 손해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다른 재산범죄와 단순비교하여 위 인자를 존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다) 논의 결과

-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와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를 모두 삭제하기로 의견이 합치됨

나.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1) 형량범위

(가) 다수의견 - 주무 전문위원 제시안

■ 일반 조세포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억 원 미만	-8월	4월-10월	8월-1년
2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월-10월	6월-1년	10월-1년6월
3	5억 원 이상	6월-1년	10월-1년6월	1년-2년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3유형에 포섭

■ 특가법상 조세포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년6월-5년	4년-6년	5년-8년
3	200억 원 이상	4년-7년	5년-9년	7년-12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미만	-10월	4월-1년	10월-1년2월
2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4월-1년	8월-1년2월	1년-1년6월
3	50억 원 이상	8월-1년2월	1년-1년6월	1년2월-2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3	300억 원 이상	2년-4년	3년-5년	4년-7년

(나) 소수 의견 - 주용원, 조석영

■ 일반 조세포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억 원 미만	-8월	6월-1년	9월-1년3월
2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1년	9월-1년3월	1년-2년
3	5억 원 이상	9월-1년3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 특가법상 조세포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년6월-4년6월	4년-6년	5년-8년
3	200억 원 이상	4년-7년	5년-9년	8년-12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미만	-8월	6월-1년	9월-1년3월
2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	8월-1년3월	1년-2년
3	50억 원 이상	8월-1년3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6월	1년-2년	2년-4년
2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3	300억 원 이상	2년6월-4년6월	4년-6년	5년-8년

(2) 양형인자

(가)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의 취급

의견	논거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다수 의견)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 조세포탈,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은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반면에 특가법에서는 위 가중처벌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고, 특가법의 법정형이 조세범 처벌법에 비하여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하는 것이 상당함 ○ 법률에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모두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입법자의 의사에 맞지 않음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주용완, 조석영)	○ 비록 가중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고도의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높은 처벌이 필요함 ○ 세무공무원의 범행과 세무사 등의 범행 사이에 비난가능성에 차등을 둘 근거가 없음 ○ 다른 범죄군에서도 행위자의 직업 또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 것과의 균형 고려
-----------------------------------	--

(나) 일반 조세포탈 유형의 특별가중인자인 “상습범인 경우”
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의견	논거
가중인자 설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다수 의견)	○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4항에서 조세포탈죄의 상습범은 형의 1/2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조세포탈” 유형에서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함. 반면에 다른 유형과 관련해서는 가중 처벌 규정 없음 ○ 범죄의 성격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일회성으로 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범죄의 속성을 고려하여 조세포탈보다 권고형량범위를 더 높게 설정함 ○ 상습범인 경우를 가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행이 일회성인 경우를 감경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상당함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자는 의견 (주용완, 조석영)	○ 동일 전과가 수회 있는 경우에는 비록 이번 범행이 1회로 끝났더라도 그전에 범한 전과에 비추어 상습범으로 처벌할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해야 함

(다)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고액채납자”를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 논의 결과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됨
- 대부분 다른 양형인자로 포섭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라) 전제 세액 중 포탈세액이 차지하는 비율(포탈률)을 양형
인자로 반영할지 여부

- 논의 결과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됨
- 실무상 포탈률을 심리하기 용이하지 않은 점 고려

(마) 국세기본법 제51조에 기한 충당을 양형인자로 추가하자는 의견

- 감경인자로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를 설정한 것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
- 주무 전문위원이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다. 방화범죄

(1) 양형기준 설정대상의 범위

- 문화재방화
 -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방화로 인하여 막대한 문화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록 발생사태가 극히 적더라도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데 의견이 일치됨

(2) 유형분류 및 권고형량범위

-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산림방화의 권고형량범위가 낮다는 의견
 -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유형의 경우 범행의 동기를 유형분류에 반영하자는 의견

(3) 양형인자 관련

(가)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감경요소로 반영할지 여부

- 다수 판결례에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감경요소로 삼고 있음
- 하지만 범행 후 피고인에게 발생한 우연한 사정을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나) 포함시키자는 의견 - 이진국, 이주원

- 외국 형법(예컨대, 독일 등)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피고인이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자연적인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비난의 정도가 감경된다고 볼 수 있음

(다) 논의 결과

- 주무 전문위원이 외국 입법례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수정하기로 함

II. 제62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2. 11. 26.(월)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범현, 이수정, 이주원, 이종교, 이진국, 조석영, 주용완, 최진녕, 최형표, 함석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공갈, 조세,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4. 회의 요지

가.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1) 형량범위

(가) 다수 의견

■ 일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6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2월 - 4년	3년 - 7년
4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원 이상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2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일반공갈의 4 유형 또는 5유형에 해당할 경우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의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범위와 일반공갈의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형량범위에 의한다.

(나) 소수 의견 - 주용원, 조석영

■ 일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6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6월 - 4년	3년 - 6년
4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5	50억 원 이상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3	50억 원 이상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2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2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3	50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 14년

(2) 양형인자

(가) 행위자의 직업 또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

(a)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해 공갈에 이른 경우
- 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을 가진 단체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해 직무상 권한행사를 빙자해서 공갈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양형인자의 효력

의견	논거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다수 의견)	○ 공무원, 기자, 시민단체 등 직업 또는 직무상 지위로 인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경우 청렴성,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이런 지위를 망각한 채 그 활동으로 얻은 정보 또는 사칭한 지위를 바탕으로 범행에 이용하는 행태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정의 필요성도 상당함
일반가중인자로 설정 (최진녕, 함석천)	○ 직업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악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반드시 행위자의 직업 또는 직무상 지위에서 비롯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직업 또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는 사례는 공갈범죄의 전형적인 사안으로서 이 요소를 특별가중요소로 삼을 경우 상당수 공갈범죄가 가중영역에서 형량범위를 권고하게 됨

나.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1) 형량범위

- 이전까지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견해가 나뉘었으나, 주무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함
-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음

■ 일반 조세포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억 원 미만	-8월	6월-10월	8월-1년2월
2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3	5억 원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3유형에 포섭

■ 특가법상 조세포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년6월-5년	4년-6년	5년-8년
3	200억 원 이상	4년-7년	5년-9년	8년-12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미만	-10월	6월-1년	10월-1년2월
2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3	50억 원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3	300억 원 이상	2년-4년	3년-6년	5년-7년

(2) 양형인자

(가)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의 취급

의견	논거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다수 의견)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 조세포탈,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은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반면에 특가법에서는 위 가중처벌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고, 특가법의 법정형이 조세범 처벌법에 비하여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하는 것이 상당함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주용완, 조석영)	○ 비록 가중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고도의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높은 처벌이 필요함 ○ 세무공무원의 범행과 세무사 등의 범행 사이에 비난가능성에 차등을 둘 근거가 없음 ○ 다른 범죄군에서도 행위자의 직업 또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 것과의 균형 고려

(나) 일반 조세포탈 유형의 특별가중인자인 “상습범인 경우”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의견	논거
가중인자 설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다수 의견)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에서 조세포탈죄의 상습범은 형의 1/2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조세포탈” 유형에서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함. 반면에 다른 유형과 관련해서는 가중처벌 규정 없음 ○ 범죄의 성격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일회성으로 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범죄의 속성을 고려하여 조세포탈보다 권고형량범위를 더 높게 설정함 ○ 상습범인 경우를 가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행이 일회성인 경우를 감경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상당함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자는 의견 (주용완, 조석영)	○ 동일 전과가 수회 있는 경우에는 비록 이번 범행이 1회로 끝났더라도 그전에 범한 전과에 비추어 상습범으로 처벌할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해야 함

다. 방화범죄

(1) 양형기준 설정대상의 범위

- 업무상실화, 중실화, 자기소유 건조물 등 방화,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방화연소, 진화방해
- 제외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2)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가) 일반적 기준,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 다음과 같이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 일반적 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2	공용건조물 등 방화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3	일반건조물 등 방화	1년-2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4	일반물건방화	6월-1년	10월-2년	1년6월-4년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문화재 방화	2년6월-4년	3년-8년	6년-12년
2	산림 방화	3년-6년	5년-9년	8년-13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나)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a) 제시된 안

- 제1안 - 방화범죄 양형기준에는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만 규정,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규정하는 방안
- 제2안 - 모든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를 방화범죄 양형기준에 규정,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
- 제3안 - 모든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를 방화범죄 양형기준에 규정,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를 하나의 소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
- 제4안 -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와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방안

- ▶ 제4-1안 :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의 양형테이블을 하나로 만드는 방안
- ▶ 제4-2안 :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의 양형테이블을 살인범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범행의 동기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의 양형테이블을 만드는 방안. 예컨대, 살인범죄의 제2, 3, 5유형을 준용하여 3개의 소유형으로 구분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방안

(b) 논의 결과

의견	논거
제4-1안 (이수정, 이주원, 이종교, 이진국, 함석천)	○ 살인의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와 과실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이에는 비난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해야 함 ○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면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면 되고, 이 부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비난 동기 살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형량범위를 참고로 하면 될 것임 ○ 다만 살인범죄 양형기준과 달리 살인의 1, 2유형과 5유형과 같은 경우는 양형인자로 적절히 포섭시키면 충분하고 별도의 소유형을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음 ○ 과실로 인한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의 경우에도 행위 유형이 다양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를 다소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제3안 (범현, 최진녕, 최형표)	○ 실무상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에 있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판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실제 선고된 사건들을 분석해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와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대략 양자를 구분하여 형량분포를 분석해 보아도 소유형으로 구분할 정도의 형량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 법원실무가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하여 구분하여 심리나 양형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양형위원회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양형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음 ○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와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포괄하여 하나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상당함
제4-2안 (주용완, 조석영)	○ 제3안에 따르면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의 경우에는 권고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의미가 없어짐 ○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범행 동기가 매우 다양하므로 범행 동기에 따라 다시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제3안에 의할 경우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4년-10년	7년-13년	10년 이상, 무기 이상

○ 제4-1안에 의한 경우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4년-10년	7년-13년	10년-17년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양형인자 관련

(가)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자의로 진화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최형표, 범현, 최진녕)

- 방화범죄의 성격상 조기 진화가 중요한데, 피고인이 방화 초기에 적극적으로 화재를 진화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음
- 독일 형법 제306조e “현저한 손실이 일어나기 전에 행위자가 자의로 화재를 진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방화범죄의 특성,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로 하여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행위자가 진화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는 것이

상당함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와는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함.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해서 대법원이 독립연소설을 취하고 있어 기수가 되더라도 방화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야 함
- 피고인이 방화 후 바로 후회하고 자의로 진화하여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면 이중 감경하는 것이 정의에 더 부합함

○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자의로 진화한 경우 또는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는 하나의 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이주원)

- 양형의 인자가 중복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하나의 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조석영)

- 살인범죄의 경우에도 “범행 후 구호후송”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 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인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자의로 진화한 경우”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 특별감경인자로 유지하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주용완)

-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자의로 진화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를 넘어서 기수에 이르렀지만 자의로 진화한 노력을 양형에 반영하여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자의로 진화한 경우 이외에도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적 사정에 의하여 진화됨으로써 피해가 경미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우연한 사정까지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감경요소로 반영할지 여부

- 다수 판결례에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감경요소로 삼고 있음
- 범행 후 피고인에게 발생한 우연한 사정을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연적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함
- 논의 결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III. 제63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2. 12. 3.(월)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김혜정, 범현, 이수정, 이주원, 이종교, 조석영, 주용완, 최진녕, 최형표, 함석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조세,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4. 회의 요지

가.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1) 유형분류 및 권고형량범위

(가) “공용건조물 등 방화 유형”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유형”과 통합할지 여부 - 통합하기로 하는 데 의견 일치됨

- 방화범행 당시 건물 내에 사람이 있었던 경우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만이 아니라 공용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되는 사례도 있음
-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의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에는 기소되는 죄명에 따라 형량범위가 달라지는 문제점 발생할 수 있음
- 양자의 법정형이 동일함

■ (수정 후) 일반적 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 <u>공용건조물 등 방화</u>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2	공용건조물 등 방화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3 2	일반건조물 등 방화	1년-2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4 3	일반물건방화	6월-1년	10월-2년	1년6월-4년

(나)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설정

의견	논거
제4-1안 (김혜정, 이수정, 이주원, 이종교, 이진국, 함석천)	○ 살인의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와 과실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이에는 비난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해야 함 ○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면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면 되고, 이 부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는 살인범죄 양형기

	준의 비난 동기 살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형량범위를 참고로 하면 될 것임 ○ 다만 살인범죄 양형기준과 같이 동기를 세분화해서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동기는 양형인자로 반영하면 충분함 ○ 제4-2안에서 주장하는 비난 동기 살인과 같은 동기는 양형인자를 적절히 수정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하면 충분함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 적어도 특별가중인자 2~3개 이상이 적용되므로 비난 동기 살인 유형은 대부분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유형을 구분할 필요 없음 ○ 제4-2안에 의하면 유형분류의 기준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문제 발생함. 즉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의 경우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구분한 다음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동기를 기준으로 별도의 소유형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동기는 양형인자로만 반영한다면 유형분류의 일관성, 통일성을 해쳐 양형기준의 논리적 정합성이 크게 떨어짐 ○ 과실로 인한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의 경우에도 행위 유형이 다양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를 다소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제3안 (범현, 최진녕, 최형표)	○ 실무상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에 있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판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실제 선고된 사건들을 분석해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와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대략 양자를 구분하여 형량분포를 분석해 보아도 소유형으로 구분할 정도의 형량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 법원실무가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하여 구분하여 심리나 양형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양형위원회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양형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음 ○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와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포괄하여 하나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상당함
제4-2안 (주용완, 조석영)	○ 제3안에 따르면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의 경우에는 권고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의미가 없어짐 ○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범행 동기가 매우 다양하므로 범행 동기에 따라 다시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제4-2안에 따르면 살인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비난 동기 살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에서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가 법정형이 더 높음에도 권고 형량범위가 낮아지는 문제 발생함

■ 논의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형량범위(안)

○ 제3안에 의할 경우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4년-10년	7년-13년	10년 이상, 무기 이상

○ 제4-1안에 의한 경우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4년-10년	7년-13년	10년-17년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 제4-2안에 의한 경우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4년-10년	7년-13년	10년-17년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4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극단적 인명경시의 경우)	18년-23년	22년-27년	25년 이상, 무기 이상

(2) 양형인자 관련

**(가)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자의로 진화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지 여부 -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의견 일치**

- “현저한 손실이 발행하기 전에 자의로 진화한 경우”는 기존안의 일반감경인자인 “진화 기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특별감경인자인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가 결합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현저한 손실이 발행하기 전에 자의로 진화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적용할 경우에는 다른 인자와 중복 적용 문제가 전혀 없지 아니함
- 따라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일반감경인자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현저한 손실이 발행하기 전에 자의로 진화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됨

(나) 양형인자 정의 일부 수정 및 추가 - 의견 일치

(a)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수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의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가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b)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일부 수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거워서 저지른 경우
 - ~~차거나 제3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이익을 취할 의도 아래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에 반대하는 입주자들의 주거나 사업장에 방화하는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실력 행사의 일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c)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양형인자 정의 추가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고, 소실 후에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방화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대한 방화
 - 국립공원의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내 산림,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방화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조세범죄 양형인자 관련 논의 결과

(1) 조세포탈 유형

(가) “기한부 포탈의 경우”를 별도의 특별감경인자로 설정

(a) 원안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포탈세액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조세포탈에 이른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b) 수정안

- 기한부 포탈의 경우 반드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기한부 포탈은 영구적 포탈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와는 별도의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됨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포탈세액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조세포탈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간과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산입될 익금이나 손금의 확정시기의 조작 등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나) 일반가중요소 추가 - 모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의견 일치

○ 논의의 대상

- ① 법인이나 단체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 ② 상장법인이 회계를 분식하여 범행한 경우
- ③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과점주주가 범행을 한 경우
- ④ 조세포탈의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증거서류를 폐기한 경우

○ 논의 결과

- 논의 결과 위와 같은 사유는 대부분 다른 범죄로 평가되어 별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거나(①, ②, ④의 경우), 다른 행위자에 비하여 가중 처벌 할 근거가 부족하므로(③의 경우) 양형인자로 추가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됨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가)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양형인자 수정

- 논의 결과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으로 수정하는 데 의견이 일치됨

(나)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할지 여부

의견	논거
반대하는 의견 (범현, 최진녕, 이수정, 이주원, 최형표, 함석천)	○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와 거래중단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상대방이 이에 응한 경우가 엄밀하게 구분하기 곤란하고, 양자간에 형량의 차등을 두어야 할 근거도 분명하지 않음 ○ 공갈에 이르는 정도의 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갈죄로 처벌하면 충분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이해관계

	가 맞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실제 판결 사례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거래처에 거래중단을 내세우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 경우를 가중처벌한 사례도 발견되지 아니함 ○ 조세범죄는 그 속성상 범행수법이 불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어서 다른 범죄와는 달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별도의 양형인자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만 가중인자로 설정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아니함
찬성하는 입장 (이종교, 김혜정, 주용완, 조석영)	○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 비하여 거래처에 거래중단을 내세우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됨 ○ 특별감경인자로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을 설정한 것과 균형을 고려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경우는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 “세무관행을 소극적으로 추종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할지 여부

- 논의 결과 기존의 잘못된 세무관행을 추종했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을 해주는 것은 엄정한 양형기준 설정 취지에 반하므로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IV.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64차 전체회의는 추후 개최하기로 함